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 **보 도 자 료**

희망의 대한민국 http://www.motie.go.kr

2014년 4월 23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기술개발과 천영길 과장(044-203-4520), 박만희 사무관(4521)

연구개발(R&D) 자금의 부정사용 시 제재 강화

- R&D 제재부가금 관련 산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는 산업기술 연구개발(R&D) 제재부가금을 의무화하는 **산업기술혁신 촉진법**(이하 산촉법) **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를 통과**함에 따라 **후속 법령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**했다고 밝힘.

○ 이번 일부 개정 법률안은 종전에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**제재부가금의 부과·징수를 의무화**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

- 경미한 사항에 대한 **면제조항과 경과조항**을 두고 있음.

○ 입법 예고한 **산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**에는

- 제재부가금 **면제조항의 구체화 및 제재부가금 부과율 완화**(시행령), 제재부가금 부과 시 신중과 공정을 기하기 위한 **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**에 관한 내용(시행규칙) 등이 포함되어 있음.

□ 제재부가금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연구비의 환수 외에 해당 금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추가로 부가금을 징수하는 제도로서,

○ 앞서 산업부는 제재부가금제도 시행을 '**비정상의 정상화 이행과제**'로 정하고,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안에 전면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음.

□ 산업부 **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**은 "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구비 **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**을 높임으로써 **건전한 연구개발비 사용 환경을 조성**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."면서, "**현장 연구개발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을 개정하겠다.**"라고 밝힘.

붙임 :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1부.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박만희 사무관(☎ 044-203-452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